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11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김한규 · 임미애 · 안호영
윤건영 · 맹성규 · 이용우
윤준병 · 양부남 · 고민정
이상식 · 이주희 · 진성준
박민규 · 송기현 · 김태년
박홍배 · 서미화 · 진선미
김문수 · 복기왕 · 위성곤
문대림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돼, 2026년 6월 3일에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음.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 교육의원을 제외하여 의원정수를 4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제주도 유권자를 대표할 도의원 수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제주도민의 의사가 의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낮추고, 도민의 표의 가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교육의

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에 따라 사무 및 자료 승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육위원을 제외한 도의회의원 정수를 45명 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구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비례대표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늘리고, 현행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등 일체의 사무 및 자료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을 “정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를 “의원정수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를 ““도의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7조까지 및 제29조를”을 “제29조까지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 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정시 또는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에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도의회에 설치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도의회위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u>정수(제64조에 따른 교 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u>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36조(도의회위원의 정수에 관 한 특례) ① ----- ----- ----- <u>정수는</u> ----- ----- ----- ----- -----.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 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 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u>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 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u> <u>0</u>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 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 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② ----- ----- ----- <u>의원정수의 100분의 25</u> ----- ----- ----- -----. -----.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 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 -----

위원회의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① -----

----- . -----

----- “도의회” -----

<u>원회</u>”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② (생 략)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 <u>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②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u>제27조까지</u> 및 제29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 (생 략)	----- -----.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u><삭 제></u> ② ----- ----- ----- -----<u>제29조까지를</u>----- -----. ----- ----- -----. 1. 2. (현행과 같음)
--	--